

「모임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"모임통장(이하 "이 통장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은 단체모임 회비관리통장이며,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최저가입금액

이 통장의 최저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 회비납부관리

이 통장의 거래처는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(www.kebhana.com)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를 통해 회비납입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부대서비스

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자동이체건수가 10건 이상이고, 입금액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그 다음달 9일까지 이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5회까지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